

#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이기준 의원

찬 성 자 : 이묘배, 최선호, 최순희,  
신재향, 정성훈, 성용근  
의원(6명)

## 1. 제안이유

양산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말산업 육성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양산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말산업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양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**제4조(육성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·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산시 말산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양산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,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

2.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
  3.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  4.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  5.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)**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
2.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3.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, 대회, 축제 등
4.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
5.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·절차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**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교육·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■ 「말산업 육성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4조(말의 수급·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,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,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국내산 말의 육성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(이하 “국내산 말”이라 한다)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
2.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
3.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

### ■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